

수원지방법원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6376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7. 10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박주용	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5.6.11. 경매개시결정			배당요구종기	2025. 8. 29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박준수	402호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	1999.12.09.		
<비고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-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6376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89-2
재원주택
7동

알.씨조 슬래브지붕 4층다세대
주택
1층129.765㎡
2층129.765㎡
3층129.765㎡
4층129.765㎡
지층129.765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4층402호
알씨조
59.92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189-2
대 521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521분의 26.14

매각지분 갑구 6번 2분의 1 박강욱 지분 전부

감정평가액		47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8.14	47,000,000	4,700,000
2회	2026.09.16	32,900,000	3,290,000
3회	2026.10.27	23,030,000	2,303,000
4회	2026.11.27	16,121,000	1,612,100

-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
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
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
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

열람용